

● **환경부령 제1004호**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11월 21일

환경부장관 인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측기관”을 “관측기관(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을 말하며, 이하 “관측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(이하 “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·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,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8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에 관한 특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2023년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매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·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관측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이 개정(법률 제18904호, 2022. 6. 10. 공포, 2022. 12. 11. 시행)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

